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라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한 거래(이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만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2)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등 관계의 설정·유지 여부를 판단하거 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3) 금융거래등에 관한 정보
 - 4) 2) 또는 3)과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나.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가목의 정보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허용된 정보 제2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만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8호 중 "수집·처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란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조회,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 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1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4장(다만, 제22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조의 규정을 제 외한다)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 및 출판업무

제12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로하고, 제12조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 "중에"를 "또는 명칭 중에"로, "명칭을"을 "문자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경우
- 2. 제1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업을 한경우
- 3.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겸업을 한 경우
 -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금지된 정보를 처리한 경우

- 5. 제16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 니한 경우
-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8.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 9.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 본문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10.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 제14조제2항제11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1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한 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4. 제4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 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15.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6.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제3장의 제목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를 "신용정보의 처리"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 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회 사등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신용정보회사등이 부담한다.

제15조의3(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등고지)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8조의3에 의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의 제목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을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을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4.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5.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을 "(처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신용 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2), 3) 및 4)에 규정 된 신용정보 중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자격 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개인신용정 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신용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을 "제1항에 따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를 "위탁받은 자"로.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로,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변조"를 "위조·변조"로,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6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하여"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위탁자는 처리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 및 관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신용정보의 안전보호)"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용정보"로, "입력된 정보"를 "신용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중 "수집·처리·이용"을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한 경우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제2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을 "신용정보회사등은"으로, "임원"을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 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거래등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금융거래등 관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활용하는"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제5항 중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및 금융거래등 관

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의 피후견인

제22조의2의 제목 "(신용정보 등의 보고)"를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용조회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호 중 "제32조제6항제4호"를 "제32조의2제2항제7호"로 한 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한다. 제25조제6항 후단 중 "제2조제1항제1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부과하는 사항"을 "부과하기 위한 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규약의 제 · 개정 및 폐지

제26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규약을 제 ·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피후견인

제31조 중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을 "신용정보회사등은"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만, 기존에 동의한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위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를 "신용정보주체로부터"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확인한 경우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
- 5.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 서로 집중관리·활용 하기 위한 경우
- 6.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7.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9.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8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야 한다.

- 10.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 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 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제6호의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⑦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된 것을 알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동의를 받는 방법)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 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이 제15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 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를 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④ 신용정보회사등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정보를"을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을 "(금융거래 등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으로 하고, 제36조제1항 중 "상거래관계"를 "금융거래등 관계"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를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32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품이나 용역을"을 "상품 및 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따른 추가적인 사후고지절차를 거쳐야"를 "따라 사후고지를 하여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를 "신용정보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을 "열람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으로,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를 "지체 없 이"로 한다.

제3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신용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4항 중 "요구하는 자"를 "요구하는자(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전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본문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금융거래등 관계"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제38조에 따른 열람청구 및 정정청구, 제38조의3에 따른 삭제 요구(이하 "열람등요구"

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사망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연고자"라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그 사망한 자의 신용정보 열람등요구를 할수 있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제3항에 따른 연고자(이하 "열람등요구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열람등요구자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신용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열람등요구자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을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으로 하고,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 전단 중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 항까지를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회등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등은"을 "신용정보회사는"으로 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을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40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을 "개인신용정 보를"으로 하고, 제3항 중 "개인비밀을"을 각각 "개인신용정보를"로, "개인비밀이"를 "개인신용정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신용정보업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 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를 "개인신용정보를 분실·도난·누출·위조·변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비밀을"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인비밀임"을 "개인신용정보임을"로, "개인비밀음"을 "개인신용정보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5.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 6. 제17조제8항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

여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8.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9.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42조의2제2항 단서 중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이용자"를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자"로, "변조"를 "위조·변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변조"를 "위조·변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를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 지"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손해배상의 보장)"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제43조의3 중 "손해배상책임"을 "손해배상책임 중 개인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신용정보회사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퇴임한 그 임원이나 퇴직한 그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로

제50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 2.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제50조제2항제3호 중 "위반"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하다.

제50조제2항제5호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을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6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 6의3. 제32조의2 제1항·제2항·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6의4. 제32조의2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거나 같은 조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위반"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4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10. 제42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11.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제5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제4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 4. 제4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제50조제3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 6.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 거래등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한 자
- 10. 제4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제4항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지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기록을보존하지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몰수·추징 등)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수 있다. 이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수 있다.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한 자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자
- 4.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52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3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자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거 나 고지하지 아니한 자
- 6.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아니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나 신용조사 또는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한 자
-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요구를 받고도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출처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하면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제2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 6. 제2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아니한 자
 - 7. 제21조를 위반하여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 8.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신용정 보의 이용자
- 9.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 10.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하지 아니한 자
 - 1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제52조제2항제13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제37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제37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사후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 보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아니한 자
- 15.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6.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17.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8.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19.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20.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21.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 22.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 24.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5. 제4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 26.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7.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
- 2.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위탁자
- 제52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 1.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단서를 위반하여 사후에 보고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
- 2. 제1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업을 한 신용정 보회사
- 3.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한 신용조회회사
- 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이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그 상임 임원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면서 같은 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6.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탁자를 교육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 등
 - 7.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수탁자
-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 강화 등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10.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11. 제20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면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1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한 신용조회회사

- 1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신용조회회사
- 제52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 15.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 16.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17.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신원과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 18.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게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등
- 19.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등
- 20.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아니한 자
- 2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신용정

보회사등

2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23.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 1. "신용정보"란 다음 각 목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개 정 안

정보를 말한다.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한 거래(이 하 "금융거래등"이라 한다) 를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
 - 1)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만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2) 신용정보주체와 금융거래 등 관계의 설정 • 유지 여부 를 판단하거나 조건을 결정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u>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u> 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와 유사한 정보
-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 3) 금융거래등에 관한 정보
- 4) 2) 또는 3)과 유사한 정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나.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정보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
 - 1) 가목의 정보
 -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아 <u>닌 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허용된 정보

<삭 제>

<삭 제>

<삭 제>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4. ~ 6. (생 략)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 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외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 다)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만으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
- ----. <u>다만,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u> 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4. ~ 6. (현행과 같음)
-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 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적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 12. (생략)
-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 보를 입력·저장·가공·편 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 는 행위
- <u>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u> <u>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u> 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8
<u>처리</u>

9. ~ 12. (현행과 같음)

13. "처리"란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조회,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u><</u>삭 제>

<삭 제>

<u><삭 제></u>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 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 나.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 보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신용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제4 장(다만, 제22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의 허가) ①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 및 출판업무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제12조(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 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 정보 · 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생략)
 -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3.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 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 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u>신용정도</u>	<u>보회사</u>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이		<u>또는</u>
<u> 명칭 중에</u> -			
문자를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_
	_

-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 정보업을 하는 동안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계속 유 지하지 못한 경우
- 2. 제1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 여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 업을 한 경우
- 3.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 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겸업 을 한 경우
-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 리가 금지된 정보를 처리한 경 우

- 5.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7.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8. 제42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 4항을 위반한 경우

-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신 설>

- 5. 제16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 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하면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
- 8.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어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 9.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본문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 10.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 심회사가 제2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 로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 11.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

여 정보워.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신 설>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 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 용한 경우 <신 설> 1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 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한 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도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4. 제4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 <신 설> 여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 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15.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 중 <신 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6.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신 설>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제 1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호 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17. (현행 제11호와 같음)

11. (생략)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 조사 및 제3장 신용정보의 처리 처리

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 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 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 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 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 무 범위에서 수집 · 조사 및 처 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 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 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및 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제15조(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신 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처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 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서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 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경우
-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 3.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
-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신용정보회사등이 부담한다.
- 제15조의3(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 3. 제38조의3에 의해 개인신용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 하지 아니하다. 1.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 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이 법 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 제1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 ---- 정보(이하"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
 - 1. · 2. (현행과 같음)
 - 3.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 지된 정보
 - 4.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 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5.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 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 서는 아니 된다.
 - 1. 2. (생략)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 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 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 지된 정보

6.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 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 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 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6. (현행과 같음)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 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 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 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 만, 제2조제1호가목2), 3) 및 4) 에 규정된 신용정보 중 개인신 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에는 특정한 자격 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 및 제45조(해당 조문에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

갖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 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신용 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기술적 · 물리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 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 위탁받은 자 ----- 제19조, 제2 0조, 제21조, 제40조 -----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 49 -

리를 위탁하려는 <u>신용정보회사</u>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u>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 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u>제2항</u>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 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

신용정보회
사등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④ <u>제1항</u>
⑤
<u>위조•변조</u>
<u>한다.</u>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

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 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 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4장 <u>신용정보의 유통·이용 및</u> 관리

제19조(<u>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u> 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 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 ⑦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탁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⑧ 위탁자는 처리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 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목 적의 달성 등 그 개인신용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u>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u>

제19조(<u>신용정보의</u>	안전보호)	1
 <u>신용정보</u>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u>사항</u>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u>신용정보</u>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정보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
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 <u>처리</u>
②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
한 경우

이름

-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과 제공한 날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 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 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 보관리・보호인을 <u>임원</u>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설>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삭 제>
③ <u>신용정보회사등은</u>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u>를 포함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4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의 처리 혀화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신 설>

<신 설>

- ⑤ (생략)
- ⑥ (생략)
- ⑦ (생략)

<신 설>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 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 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 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 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 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 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이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 ① (현행 제7항과 같음)
-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간 등) ① ---------- 금융거래등 관계-----

- (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 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급용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 ③ (생략)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3 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u>활용하는</u> 경우 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금융거래등 관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이용하거나</u>
제공하는
<u>다만, 대통령령으</u>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 제의 방법·절차 <u>및 금융거래</u>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장 신용정보업

-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 3. ~ 7. (생략)
 - ② (생략)
-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 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도 성하는 목석으로 개인신용성
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⑤
및 금융거래등
관계
제5장 <u>신용정보회사 및</u>
<u>신용정보집중기관</u>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1. (현행과 같음)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
견의 피후견인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신용조회회사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 저 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 회회사는 제32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 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 공하는 경우
- 의 제공 요청 등) ① ~ ③ (생 략)
 -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 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2

②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1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성	<u> </u> -
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u>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히	<u> </u>
여야 한다.	

22	조	의;	3(7	베잍	를 호	사	. <u>F</u>	-에	대	한	개
인	신	용	정.	乜	제	공	금	지)			
							_				
										•	

- 1. (현행과 같음)
- 2. 제32조의2제2항제7호-----
-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의 제공 요청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 ④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 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

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 정보제공・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지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

- ⑤ (생략)
-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

우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u>.</u>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6)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 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 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 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 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 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 다.

-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 2. (생략)
 -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 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 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 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생 략)<신 설>

<u>제2조제8호</u>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부과하기 위한 규약의 제ㆍ
개정 및 폐지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의2제1호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을 위한 규약의 제·개정 및

5. (생략)

- ② 삭제
-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 기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략)
- 2.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3. ~ 8. (생략)

<u>폐지</u>								
<u>6</u> .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하며, 제1항제3호</u>								
및 제5호에 따라 규약을 제ㆍ개								
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								
<u>다</u> .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								
인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								
견의 피후견인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 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 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 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 <u>서 개인신용정보의</u> 정확성·최 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sim	(10)	(현	. 행 🤄	叶	같음	宁)			
제	31	조(신용	-정]	보횔	용.	체기	레의	공	시)	
	<u>신</u>	용 7	정보	회시	등	<u>슨</u>					
										- – –	
								- — —			
				_							

용)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

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5조의2제1항제2호 · 제4호
 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 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 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 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 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삭 제>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 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 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 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 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 우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 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 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 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 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 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 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 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삭 제>

<삭 제>

<삭 제>

- 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 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 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 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 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 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①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 <삭 제>

<u><</u>삭 제>

<삭 제>

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 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생략)

① (생략)

<신 설>

<신 설>

- ④ (현행 제10항과 같음)
- ⑤ (현행 제11항과 같음)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 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신 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 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이전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목 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신용 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2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정보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 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 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
- 5.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상호간 서로 집중관 리・활용하기 위한 경우
- 6.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 7.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8.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 9.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 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8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 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 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 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 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 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 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 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10.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 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 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 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 공하는 경우

- 11.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 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질서문란행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과점주주, 최 다출자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 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 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 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제공 사실 및 이유 등(제6호의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및 절차를 포함한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⑦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제2

항제4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신용정 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처리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32조의3(동의를 받는 방법)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 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과 관 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 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명확 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상품 및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 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 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 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 보주체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이 제15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를 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방식</u>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 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 대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④ 신용정보회사등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 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삭 제>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 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 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 용)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 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를 제공ㆍ이용하는 경 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 용한다.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 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 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 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 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삭 제>

실의 조회) ① --------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 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 인신용정보를 -----

<단서 삭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 략)
- ② · ③ (생 략)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제공 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한다.

②·③ (생 략)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 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 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 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 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 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 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금융거래등 거절 근거 신
<u>용정보의 고지 등)</u> ①
금융거래등 관계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u>제</u> 3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u>상품이나 용역을</u> 소개하거나 구 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

<u>제32조의2제2항</u> -
②
<u>상품 및 서비스를</u>
③

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 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⑤ (생 략)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 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 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 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 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u>정정청구를 받</u> 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

따라
사후고지를 하여야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등) ① <u>신용정보주체는</u>
<u>이 경우 신용정보</u>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
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u>한다.</u>
② <u>열람청구를</u>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지체 없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 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 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u>지체</u>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 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 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등은
<u>지체</u>
<u> </u>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
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u>4</u>
④
④ <u>요구하는 자(삭</u> 제하거나 정정하기 전 신용정보
④
④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⑥ ----- 제5항-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 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 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 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 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⑦ 제6항-----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⑧ ----- 제6항-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 요구) ① ----- 금 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융거래등 관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

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 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신 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제38조에 따른 열람청구 및 정정청구, 제38조의3에 따른 삭제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 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 열람등요 구를 할 수 있다.
- ③ 사망한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는 신용정보회 사등에게 그 사망한 자의 신용 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주체,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

따른 연고자(이하 "열람등요구 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 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 다.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제3항에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열람등요 구자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신용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열람등요 구자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u>신용정보</u>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누설된 <u>신용정보</u>의 항목
- 2. ~ 5.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u>신용정보</u>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 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 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④ (생략)
- ⑤ (생략)
- ⑥ (생략)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 저항) <u>신용정보회사등은</u>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

② 개인신용
정보
③
개인
신용정보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금융위원
회등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
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세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
항) ① 신용정보회사는

- 며, <u>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u>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6. (생략)
-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 <u>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경우</u>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도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 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 1.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 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세42조(업무	목적	외	누설	금지
등) ①				제17
조제1항				
			- — — -	
			- — — -	
	<u>개인신</u>	용정	보를	
.				

- ② (생략)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가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신 설>

<신 -	설>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개

 인신용정보를

 ---- 개인신용정보를

 ---- 개인신

 용정보가

 ----- 개인신

 용정보를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신용정보업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 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 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 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그 개인신용정보가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지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u>개</u>
 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u>개</u>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기열선 사장을 필인시고 정니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
<u>다.</u>
세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1 <u>개</u>
출·위조·변조
2 7H
-· 인신용정보를
3
o. 개인신용정보임을
개인신용정보를
/미단단이 0프린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 /비10파이/시11 8 분 기원이 역

느저다 지점으 아버지도 여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신 설> 5. 제16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 를 수집한 경우 6. 제17조제8항의 감독을 소홀 <신 설> 히 하여 수탁자가 같은 조 제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u><신</u> 설> 7.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8. 제32조의2제1항·제2항·제6 <신 설> 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9. 제3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신 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 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 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 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 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 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 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 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 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u>이용자(수탁자를 포함</u>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

	게1차게1초보다 게2초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u>
	까지의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
	의 과징금, 제1항제4호부터 제8
	호까지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
	의 과징금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	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	
	시 0 기/스타기로 교체되다 시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
	<u>하 이 조에서 같다)</u>
	•
	(2)
	이용자

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	위조·변조
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	
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	⑥ 제17조제1항
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	
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	
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진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	①
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	

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 (생략)
- 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u>변조</u> 또는 훼손된 경우
- ② (생략)
- ③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 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 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 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위조·변조
② (현행과 같음)
(3)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43조의3(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가입 등)
<u></u> 손해배상책
임 중 개인신용정보주체에 대한
<u> </u>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 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0조(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

제4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 회(제45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 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 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 터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 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 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퇴임한 그 임 원이나 퇴직한 그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기록 • 유지하 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of ---.

③ (현행과 같음)

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2. (생략)
- 3. 제16조를 위반한 자
-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2.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
거나 이용한 자
②
1.・2. (현행과 같음)
3 위반하여 민감정
. — -))
<u>보를 처리</u>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19조제1항을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19조제1항을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19조제1항을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19조제1항을

6.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u>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u> 포함한다)을 위반한 <u>자</u>

<신 설>

<신 설>

<신 설>

-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한 자

6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자

6의3.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 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자

6의4. 제32조의2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공 받은 신용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지 아니한 자

<삭 제>

8. ----- 위반하여

<신 설>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9. 제4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 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 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 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10. 제42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11.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 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은 자
- ③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4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 4. 제4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5. 제40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신 설> 여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 요한 자 <신 설> 6.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 여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 거나 금융거래등 관계 외의 사 생활 등을 조사한 자 <u><신</u> 설>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 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 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한 자 5. (생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10. 제4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 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 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 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 6. (생략)
-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 8. 9. (생략)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5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 용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 하지 아니한 자
 - 5. -----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6. (현행과 같음)
 - 7. -----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 8. 9.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몰수 · 추징 등) 제50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 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 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 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제52조(3	가태료) <u>(</u> 1)		- —
				- —
1. 제1	5조의2제	1항을	위반하	여

2. 제19조를 위반한 자

<신 설>

3.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신 설>

<신 설>

5. (생략)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 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용한 자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자4.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자

<u><</u>삭 제>

- 5. 제3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자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자
- 6.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 반한 자

<신 설>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 2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 나 신용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한 자
-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 정보주체로부터 요구를 받고도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출처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 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달 하면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한 자
- 5. 제2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 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 서를 위반하여 임원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 자
- 6. 제20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

4. 제21조를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신 설>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 반한 자

<신 설>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 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 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를 위반하여 보유정보 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지 아니 한 자

8. 제23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 은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한 신용정보의 이용자

9.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한 자

10.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지아니한 자

1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 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하지 아니한 자

1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
 인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7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
 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

9.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u><신</u> 설>

<신 설>

<신 설>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지 아니한 자 및 제37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사후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 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하거나 정정하지 아니한 자

15.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처 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 용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 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 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 지 아니한 자

20.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생략)

14.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신 설>

<신 설>

③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 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

21. 제3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관리결과를 통 지하지 아니한 자

22. 제39조를 위반하여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23. (현행 제13호와 같음)

24.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금융위원회등에 신 고하지 아니한 자

25. 제4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 여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에 이용한 자

26.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 느 하나를 위반한 자

<u><신 설></u>

<신 설>

-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
- 2.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 인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위탁자

-----.

- 1.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단 서를 위반하여 사후에 보고하 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
- 2. 제1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업을한 신용정보회사
- 3.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 여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 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한 신용조회회사
- 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회사의 상임 임원이 금융위원 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 의 상무에 종사한 경우 그 상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

 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신 설>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신 설>

<신 설>

임 임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면서 같은 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 탁자를 교육하지 아니한 신용 정보회사등

7.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수탁자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 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 사등

9.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 강화 등에 따른 관리 를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10.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 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아니한 신용 정보제공·이용자

11. 제20조의2제4항 본문을 위 반하여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생략)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제32조제3항・제7항 또는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근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자

<신 설>

<신 설>

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하면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1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한 신용조회회

 사

1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 니한 신용조회회사

14. (현행 제8호와 같음)

15.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 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16.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17. 제3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신원과 이용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18.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신용정보회사등

<신 설>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신 설>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9. 제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게 제공한 신용정보회사등
 20.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 20. 제32소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아니한 자
- 2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였음에도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 2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신용정보회사등 23.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13.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구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5) (생 략)

<삭 제>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신용정보팀

연 락 처

(02) 2156 - 9670